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6. 13.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 번호	제70호
---------	------

제출연월일 : 2019. 6.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 ~ 제7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및 사업신청(안 제9조 ~ 제10조)

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제16조)
-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안 제17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안 제18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

제출처	개선안	반영여부
충남성별영향 평가센터	제6조(기본계획) 제3항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견수렴 추가요청	반영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3항 추진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신설요청	반영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4호 마을공동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 여성 마을리더 활동 우수사례 조사·연구 신설요청	반영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041-635-4076)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논산시(이하“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3.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육성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4. 마을 환경·경관개선,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마을·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 사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4. 마을공동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 여성 마을리더 활동 우수사례 조사·연구
5. 마을공동체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관리
7.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마을자치분권과장	김 병 호
	마 을 자 치 팀 장	양 미 호
	담 당 자	김 현 정 (746-5323)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중간조직) 운영비용

나. 추계결과 : 500,000천원(매년 1억원)

- ◎ 2019년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 1식 = 100,000,000원	100,0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사 업 비 : 5억원(매년 1억원)

3. 작성자

마을자치분권과장 김 병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국 비							
기 금							
도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시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201 일반운영비							
04 사무관리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보조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2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	---------------------

□ 타 시군 조례제정 : 11개 (광역 1, 기초 10)

(‘19. 5. 14.현재)

연번	지자체	제정일	조례명	비고
1	충청남도	2012.12.3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	천안시	2016.05.11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3	공주시	2013.12.02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	보령시	2015.12.30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5	아산시	2013.03.15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6	서산시	2018.04.20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7	부여군	2018.02.12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8	서천군	2014.01.06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9	청양군	2017.07.13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0	홍성군	2016.10.06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11	예산군	2016.07.15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